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3047     |
| 의 퇴 인 | 진선미 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4.09.04. |
| 추계번호  | 24C3020     |

#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「학술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·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정보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800만원(연평균 96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안 제6조제1항제13호<br>(고등교육기관의<br>공시대상 정보) | 36   | -    | 4    | 4    | 4    | 48  | 9.6 |

주: 1) 정보공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시스템개발 관련 제출자료에 법 시행일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적용

2) 유지·보수비용은 시스템 개발비의 10%로 상정하였으며, 2025년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3) 실제 시스템 개발 항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조<br>(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<br>정보 등) | (제1항)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<br>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<br>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<br>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br>13. 「학술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·<br>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| 의무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조<br>(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<br>정보 등) | ○    |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「학술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·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정보에 포함시킬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  -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를 추가할 경우 입력시스템 및 대학알리미 개발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  - 한국연구재단(1차 조사기관)에서 대학별로 조사한 데이터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스템에 연계하는데 따른 시스템 개발이 필요
    - 해당비용은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하며, 시스템 구축은 추계 첫해인 2025년에 완료하고, 2026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    - 시스템 유지·관리 비용은 2026년 무상 하자보수기간(1년)을 거쳐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<sup>1)</sup>하되,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함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점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  - 2025년은 하반기 6개월에 대하여 추계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「학술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·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정보에 포함시킬 경우 시스템 개발비용은 2025년 기준 3,6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 -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개정안에 따른 시스템 개발비용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추계

---

1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 HW 및 SW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보수 하도록 함

[표 2] 신규 항목 개발 비용(추정) : 2025년

(단위: 명, 개월, %, 천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T직무별 투입 공수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무                   | 투입인원<br>(명) | 투입기간<br>(개월) | 투입률<br>(%) | 월평균<br>임금(천원) |
| 프로젝트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T프로젝트 관리(PM)        | 1           | 2            | 30%        | 9,853         |
| 서비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응용 SW개발              | 1           | 2            | 30%        | 7,373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시스템<br>(데이터베이스) 관리 | 1           | 1            | 30%        | 9,408         |
| 직접인건비<br>(직무별 투입공수x평균임금) (A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3,158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제경비(인건비x110%) (B) <sup>2)</sup>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4,474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기술료((인건비+제경비)x20%) (C) <sup>3)</sup> |                      | 5,526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소프트웨어 운영비(A+B+C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33,158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부가세(소프트웨어 운영비x10%)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3,316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36,474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주: 교육부 제출자료('24년 기준) 중 인건비에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'25년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계산한 결과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시스템 유지·보수 비용은 구축비의 10%<sup>4)5)</sup>를 적용하되, 무상 하자보수기간 1년을 거쳐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시스템 유지·보수비용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계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유지·보수 | -    | -    | 4    | 4    | 4    | 12 |

주: 시스템구축비용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뒤 10%를 적용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%~120%로 산정할 수 있음

3)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서 20~40%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음

4)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관리요율은 10~15%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, 「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」, 2024)

5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함

- (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) 개정안에 따라 「학술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·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정보에 포함시킬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800만원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시스템 개발    | 36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36  |     |
| 시스템 유지·보수 | -    | -    | 4    | 4    | 4    | 12  |     |
| 합 계       | 36   | -    | 4    | 4    | 4    | 48  | 9.6 |

주: 1) 정보공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시스템개발 관련 제출자료에 법 시행일에 따른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적용  
 2) 유지·보수비용은 시스템 개발비의 10%로 상정하였으며, 2025년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
 3) 실제 시스템 개발 항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경될 수 있음  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없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정혜승 | 이진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정혜승 | 02-6788-4627 | hs0387@assembly.go.kr |